

2021. 3. 1.자 시행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1
제 2 조 (적용 범위)	1
제 3 조 (방침)	1

제 2 장 인 사 관 리

제 4 조 (관내 전보)	2
제 5 조 (연구학교 우대 전보)	5
제 6 조 (체육 특기 교사 전보)	5
제 7 조 (특별 전보)	6
제 8 조 (전입교감과 교사 배치)	6
제 9 조 (신규교원의 학교 배치)	6
제 10조 전보의 특례	6
(별표 1) 전보서 열부 작성 평정 기준	9
(부 칙)	16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규정 시행 세칙	2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기준은 공립유치원 및 공립초등교원의 인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기준은 본 시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원(교감, 원감, 교사, 유치원교사, 보건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 (방침)

본 시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 방침을 적용한다.

- ① 교원 인사관리는 인사 관계 제 법규 및 전라북도교육청 초등인사관리기준에 준한다.
- ② <삭제>
- ③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참작하여 생활안정을 기한다.
- ④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성을 배제하여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 한다.
- ⑤ 인사 계획에 따른 실무세칙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2 장 인 사 관 리

제4조 (관내전보)

① 전보의 시기

1. 전보는 학년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정원 변동 및 결원 보충인 경우
 - 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 된 자 중 인사조치가 필요한 자
 - 다. 사고 및 기타 요인으로 해당학교에 계속 근무하기가 곤란한 자

② 교(원)감 전보

1. 동일교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전보 대상으로 하며 5년 이상의 근속자는 전보한다. 다만, 정년퇴직 1년 이하인 자는 1년간 유보할 수 있다.
2. 본인의 희망, 생활근거지, 지도력, 연구력을 감안하여 우선 배치하며 경합이 될 경우 “별표1”의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의하여 학교 급지 가산점, 우대 가산점을 합산하여 전보서열부를 작성하고 고득점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개정 2017.8.16.>
3. 전보서열 평정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교육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개정 2017.8.16.>
4. 동일교 1년 이상 근속교감 중 근무성적이 “양”으로 평정된 자는 전보 조치한다.(단, 학교장의 요청 또는 하위 순위 학교가 없을 때에는 유보할 수 있다)

③ 교사 전보

1. 동일교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전보대상으로 하며 5년 이상의 근속자는 전보한다.
2. 예체능 관련 특수 기능 보유자는 전입 학교장의 요청과 소속 학교장의 동의에 의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자라도 우대 전보할 수 있으며 특수 기능 보유자 인정 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단, 최근 3년 이내 도대회 1위, 전국대회 3위 이상의 지도실적으로 한다)
3. 정년퇴직 1년 이하인 교사는 유보할 수 있다.
4. 동일교 5년 이상 근속자의 전보와 일반 전보를 위하여 “별표1”의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의하여 학교 급지별 가산점, 우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 서열부를 작성 전보한다.(단, 전보서열부는 남·여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성이 100%인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7.8.16.>
5. 전보서열 평정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교육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개정 2017.8.16.>
6. 신설되는 학교의 교직원 조직, 정원 변동, 급지 변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전보는 별도의 시행 세칙에 의하여 이행한다.
7. 특수학교(급)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수교사로 임용된 자를 우선 전보한다. <개정 2017.8.16.>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교원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7.8.16.>

9.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교 근속 2년 이내에는 전보하지 아니하되 교직원 조직 강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 이상이면 타 학교에 전보할 수 있다.(단,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10. 공립학교는 초빙교사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의 2 (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전보)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내 교원의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입요청은 정원의 5% 이내에서 단위학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7.1.25., [2019.8.6.](#)>
- ③ 전입 요청 대상교사 수가 많을 경우, 연차적으로 나누어 요청하되, 연도별 전입교사 비율은 단위학교 전입교사 비율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발명교육센터 전담교사는 단위학교 장기근속자 중에서 정원의 5%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단, 이 규정에 의하여 전입된 교사는 3년 이상 발명교육센터 전담교사를 담당해야 한다) <신설 2017.8.16.>

제4조의 3 (학교장의 요청에 따른 유예)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1년 동안 전보유예 요청하여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혁신학교 만기 근무자는 2년 이내에서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5., [2019.8.6.](#)>

- ② 유예 요청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단위학교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8.6.>
- ③ 발명교육센터 전담교사는 정원의 10%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년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단, 연속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신설 2017.8.16.>

제5조 (연구학교 우대전보)

- ① 연구학교 보직 교사(연구)로서 연구실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의 내신으로 익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보할 수 있다.(단,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 (체육 특기교사 전보)

- ① 체육 특기교사(도 교육청 등재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대 전보할 수 있다.(단, 해당 학교장의 내신이 있어야 한다)
- ② 전국소년체전과 동계체전 지정종목 육성을 위한 지도교사가 지도한 학생이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전 도대표로 선발되거나, 전국대회(5개팀 이상 참가한 대회) 3위 이상 입상하여 체육특기교사로 도교육청에 등재한 경우,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 유예할 수 있다.(단, 전보유예는 5회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17.8.16.>
- ③ 체육특기교사로서 소년체전 및 동계체전 지정종목 육성을 위하여 전보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전보된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학교에서 지도한 학생(개인·단체)이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자(5개팀 이상 참가한 대회)는 전보 유예할 수 있다.(단, 전보유예는 5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7.8.16.>

제7조 (특별전보)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 조치한다.

1. 사고나 물의 야기 및 기타 요인으로 근무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자.

(단, 기타 요인으로 전보 조치하는 자는 학교장 확인서 첨부)

가. 해당 연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지시된 자

다.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삭제>

제8조 (전입 교감과 교사 배치)

① 전입되는 교감과 교사는 비경합지 학교 중에서 가급적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며 경합이 될 경우 전입서열 순위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8.9.>

제9조 (신규 교원의 학교 배치)

① 본 시에 배정된 신규 교원의 임용 대상자 명부에 의해 남·여 교사의 수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8.8.9.>

② 신규교사 비율이 단위학교 교사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학기 중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전보의 특례)

① 2013.3.1일 이후 국내 파견교사(시·도간 교류 파견교사 제외)의 파견기간은 익산시 및 동일학교 근무경력에 포함한다.(파견기간 중 해당 학교 가산점은 받을 수 없음)

② 혁신+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는 학교의 필요와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5년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재직 교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9.8.6.>

[별표1]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별표 I>

전보서별부 작성 평정기준

※ 모든 평정점은 월단위 점수로 계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1. 급지별 가산점(동일직위, 동일교)

급지	1	2	3	4	5	비고
가산점	0.017	0.025	0.034	0.050	0.067	2005.3.1부터 2017.2.28까지
	0.017	0.024	0.031	0.038	0.047	2017.3.1. 이후
	0.024	0.031	0.038	<삭제>	<삭제>	2020.3.1. 이후<개정 2019.8.21.>

2019. 익산지역 유, 초등학교 급지별 학교 일람표

구분	급지별 해당 학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특수지
					낳산, 망성, 미륵, 성당, 성북, 용북, 용성, 홍왕, 응포, 금성(2018.2.28.자 폐지)	왕궁남 (2011.12.31.까지)
					10	1
2011.3.1이후			영민 1			
2012.1.부터					왕궁남 1	
2012.2.29까지	이리동북, 이리동 이리모현, 이리부송 이리영등, 이리동산 이리고현, 이리동남 이리백제, 이리마한 익산, 익산어양, 익산공동	이리, 이리중앙 이리북, 이리북일 이리팔봉, 이리신동 이리부천, 함열 금마, 황등남, 황등 춘포	오산, 오산남, 왕궁 이리남창, 이리서 이리송학, 이리신흥 이리남, 이리석암 익산옥야, 익산한별	다송, 삼기, 석불 여산, 영민(2011.2.28.까지) 왕북, 용남, 용산 용안, 이리계문 이리삼성, 천서, 함라		
	13	12	11	13		
2012.3.1이후				다송, 삼기, 석불 여산, 용안, 용산 용남, 왕북, 이리계문 이리삼성, 천서, 함라		
				12		
2013.2.28까지	이리동북, 이리동 이리부송, 이리모현 이리영등, 이리동산 이리고현, 이리동남 이리백제, 이리마한 익산어양, 익산 익산공동, 익산한별	금마, 이리, 이리중앙 이리북, 이리북일 이리팔봉, 이리신동 이리부천, 함열, 황등 황등남, 춘포	오산, 오산남, 왕궁 이리남, 이리남창 이리서, 이리송학 이리신흥, 이리석암 익산옥야			
	14	12	10			
2013.3.1이후	이리동, 이리부송 이리모현, 이리영등 이리동산, 이리고현 이리동남, 이리백제 이리마한, 익산어양 익산, 익산공동 익산한별	금마, 이리, 이리동북 이리중앙, 이리부천 이리북, 이리북일 이리팔봉, 함열, 황등남, 춘포	오산, 왕궁, 오산남 이리남, 이리남창 이리서, 이리송학 이리신흥, 이리석암 이리신동, 익산옥야		이리유치원(2015.2.28.까지)	
	13	12	11		1	
2015.3.1이후			이리유치원 1			
2017.3.1이후			익산가온 1		익산맑은샘유치원 (2020.2.29.까지) 익산솜리유치원 (2019.9.1.~2020.2.29.)	
					1	
2020.3.1이후	금마, 낳산, 망성 삼기, 영민, 오산 오산남, 왕궁, 용안 옹포, 이리석암 함열, 천서, 춘포 황등, 황등남, 특수교육지원센터	다송, 미륵, 석불 성당, 성북, 여산 용남, 용북, 왕북 왕궁남, 용산 이리계문, 이리삼성 이리남, 이리동 이리동남, 이리마한 이리모현, 이리부송 이리백제, 이리삼성 이리신흥, 이리영등 이리팔봉, 익산공동 익산어양, 익산한별 함라, 홍왕	용성, 이리, 이리남창, 이리동북 이리동산, 이리서 이리부천, 이리북 이리북일, 이리송학 이리신동, 이리중앙 익산, 익산가온, 익산옥야, 이리유치원, 익산맑은샘유치원 (2022.2.28.까지) 익산솜리유치원 (2022.8.31.까지) 익산부송유치원 (2023.2.28.까지)	<삭제>	<삭제>	
	초(16), 특수센터(1)	초(29)	초(15), 유(4)			

2. 근무성적 <삭제 2017.8.16.>
 3. 우대가산점(동일직위, 동일근무교)

다만, 포상과 다출산 교원 우대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가. 포상

- 최고훈격 1회분에 한하여 근무 시·군이나 수상시기 제한 없음
- 교육장 표창은 현 근무교에서 수상한 1회(개)만 인정(2017. 3. 1. 이후)
 - 교육장 표창이 최고 훈격일 경우에는 교육장 표창 2회(개)를 인정

구 분	평정점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모범교원 대상 (교육감)	2.5
대통령표창, 모범교원상 (교육감)	2.0
국무총리표창	1.5
장관표창	1.0
교육감, 총장(학장) 표창	0.5
교육장 표창	0.25

나. 연구실적(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등급	규모	전국규모	시도규모
1		2	1
2		1.5	0.5
3		1	0.25

※ 인정범위 : 1년에 1종목 입상분만 인정(공동작도 개인작과 같은 점수 적용)

다. 연구학교 근무(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정별	교과부지정	도지정	시지정	도교육청 지정 교육실습협력학교
1개월 가산점	0.042	0.033	0.021	0.033

※ 도교육청 지정 교육실습협력학교 : 2005.3.1. 근무한 교원부터 적용

다만, 유치원교사는 1년 1회에 0.2점, 2회 이상은 0.4점(2013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

연구 · 시범학교 일람표

연도별	교과부	도지정	시지정
2007	함열07.3.1~08.2.29 동산06.9.1~08.8.31	이리신동, 흥왕, 이리남, 황등, 왕북, 왕궁, 황등남, 금마, 여산, 이리삼성, 천서, 익산궁동, 이리서	
2008	동산06.9.1~08.8.31	익산궁동, 금마, 왕궁, 이리서, 여산, 황등남, 황등, 천서, 웅포, 이리마한, 이리중앙, 이리남창, 용안	
2009		이리중앙, 이리남창, 왕궁남, 용안, 흥왕, 이리신흥, 함열, 오산남, 이리삼성, 이리계문 천서, 오산, 이리, 웅포, 이리유치원 <2009.3.1.~2010.2.29>	
		금마, 금성, 삼기, 석불, 영만, 익산옥야, 왕궁 이리남, 이리동산, 춘포, 함라, 황등남, 황등, 용산, 이리백제, 황등 성북<2009.9.1.~2010.2.29>	
2010		영만, 이리신흥, 흥왕, 미륵, 왕궁남, 이리마한 여산, 오산, 왕궁, 오산남, 함라, 황등남, 이리동산, 황등, 이리남, 금마, 낭산, 함열, 성북, 삼기, 함열초병설유치원	
2011		왕궁, 황등남, 영만, 함라, 이리동산, 이리남, 금마, 낭산, 마한, 삼성, 춘포, 어양 함열초병설유치원	
2012		이리남창, 이리삼성, 익산어양, 춘포	
2013		삼기, 왕북, 이리남창, 익산궁동, 춘포, 황등, 흥왕	(비고)함열:교생실 습협력학교
2014		삼기, 낭산, 황등, 황등남, 익산궁동, 흥왕	(비고)함열:교생실 습협력학교
2015		이리계문, 영만, 함열, 황등남, 낭산	
2016		함열, 영만, 이리유치원	
2017		영만	

라. 교원기능장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삭제 2017.8.16.>

- 기능장에 0.5점(1년에 1종목만 인정, 2016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까지만 적용)
다만, “다” 항의 연구실적에 해당되어 창안기능장 취득자 제외

마. 효행교원 (1회에 한함)

- 시, 군 단위 이상의 효행상(표창) 수상자는 “가” 항의 포상 훈격별 평정점 10%를 가산한 점수 부여

바. 학급담임 교감 (법정 학급담임 교감), 1월에 0.083점

사. 3자녀 이상 출산 교원에게 우대점수 1점 부여(2007.3.1.부터 시행)

아. 장애인 배우자(1급) 및 직계존비속(1급)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

<2021.3.1.자 현재 무효 /수정예정 2022.8월 중 >

<2021.3.1.자 적용은 인사관리기준 시행세칙 14번 참고>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함
- 1년에 1점(2001.3.1.부터 적용)

자. 통합학급담임도 특수학급 담임교사와 같이 적용 (2006.3.1. 이후)

차. 복식학급 담임교사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계약제 강사를 임용한 학교는 점수를 인정하지 않음

월 가산점	0.042점	0.021점
적용시기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개정 2019.8.6.>

카. 특수학급 담임교사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월 가산점	0.021점
적용시기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1년에 0.5점(월 0.042점, 2012.

3.1. 근무자부터 적용)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1년에 0.75점(월 0.0625점,
2015. 3.1. 근무자부터 적용)

타. 교과 전담교사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담기간 1년 미만도 가산점 인정

적용시기	월	년
1992.03.01.부터	0.042	0.504
2015.03.01.부터	0.021	0.250
2017.03.01.부터	삭제(가산점 없음)	

<개정 2017.1.25.>

파. 영어 특기교원 전보 가산점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유효기간 최근 2년)

구분	TEPS 점수	TOEIC 점수	TOEFL 점수			전보가산점
			PBT	CBT	IBT	
점수	915 이상	960 이상	630 이상	293 이상	116 이상	1.50
	872 이상	930 이상	620 이상	273 이상	111 이상	1.25
	793 이상	875 이상	601 이상	257 이상	103 이상	1.00
	710 이상	815 이상	580 이상	240 이상	95 이상	0.75
	572 이상	700 이상	540 이상	217 이상	82 이상	0.50
	508 이상	635 이상	517 이상	193 이상	70 이상	0.25

<개정 2019.8.6.>

- 영어기능장과 중복 시 유리한 것 1개만 사용함.<삭제 2017.8.16.>

하.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가산점(가장 우수한 입상분 1회만 가산)

등급	1	2	3
가산점	0.5	0.4	0.3

- 적용 시기는 1998년 3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인정함.

거. 학생지도 실적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전 국	도	시
등위(등급)			
1위	0.5	0.3	0.2
2위	0.4	0.25	0.15
3위	0.3	0.2	0.1

- 도교육청 및 시교육청이 주관한 각종 대회에 한하며, 최고 훈격 년(年) 1회분에 한함.(단, 체육 지도실적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적용시기

구분	인정 시기
도교육청 및 시교육청이 주관하거나 협조한 대회의 실적	2017.2.28.까지의 실적 인정
도교육청 및 시교육청이 <u>주관한</u> 대회의 실적만 적용	2017.3.1.이후의 실적 인정

<개정 2017.8.16.>

너. 체육 지도실적 우수교원

등위	감독교원			담임교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전국규모대회 및 동계체전	소년체전·동계체전 전북선발대회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전국규모대회 및 동계체전	소년체전·동계체전 전북선발대회
1	3	1.5	0.5	0.5	0.25	0.125
2	2	1	0.25	0.5	0.25	0.125
3	1.5	0.5	0.125	0.5	0.25	0.125

<개정 2017.8.16., 2019.8.6.>

- 당해학교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지도실적에 한하며, 2회 이상의 지도 실적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적용시기: 2006년 지도 실적부터 인정(2007. 3. 1.부터 적용)

더. 수업개선우수교사 <삭제 2019.8.6.>

러. 파견교사(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 월 0.042점(2008.3.1일 근무자부터 적용)

머. 1, 6학년 담임교사

- 1년에 0.25점(월 0.021점, 2019.3.1. 근무자부터 적용) <개정 2018.8.9.>

대상학년	적용시기 및 대상	월 가산점	년 가산점
6학년	2011.3.1.~ 2013.2.28. 근무자	0.021	0.250
6학년	2013.3.1.~ 2019.2.28. 근무자	0.025	0.300
1, 6학년	2019.3.1. 근무자부터	0.021	0.250

▶. 원도심학교 근무

- 대상: 가지역의 원도심학교 근무 교사(보건교사는 해당 없음)

이리남창초	이리동남초	이리북일초
이리북초	이리동산초	이리신동초
이리초	익산옥야초	이리남초
이리중앙초		

- 적용 시기 및 가산점

적용시기	월 평정점
2018.3.1. 근무부터	0.017점
2020.3.1. 근무부터	삭제(가산점 없음)

〈신설 2017.8.16.〉 <개정 2019.8.6.〉

서. 발명교육센터 전담교사

- 대상: 발명교실 전담교사
- 가산점: 월 0.0625점
- 시행: 2018.3.1.부터 근무자부터 적용 〈신설 2017.8.16.〉

어. 보건교사 가산점

- 대상: 28학급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 가산점: 월 0.025점
- 시행: 2018.3.1.부터 가산점 적용 〈신설 2017.8.16.〉

☞ 원도심학교 근무 가산점과 중복할 수 없음

부 칙(2009. 12.)

제 1 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제4조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까지 초빙 및 공모제 교장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전보 또는 중임 임용된 경우 초빙 및 공모제기간을 익산 동지역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2010.12.15)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0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가산점 경과조치)

별표 I 의 3, 가. 포상은 ‘최고 훈격 1회분에 한하며 근무 시·군이나 수상시기 제한 없음 ‘을 ‘동일시·군 동일직위 최근10년’ 으로 2011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

별표 I 의 3, 너. 전산능력보유교원 가산점은 2011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부여하지 않는다.

부 칙(2012.1. 16.)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1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 학교)

특수지 학교가 없어짐에 따라 특수지 학교 전입서열에 관한 규정은 삭제한다.

제3조(우대 가산점 경과조치) 별표 I 의 2, 라. 교원기능장 가산점은 2016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까지만 적용한다.

부 칙(2013.1.18.)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2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제2조 본 인사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원인사 관리기준을 따른다.

부 칙(2015.1.2.)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3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제2조 본 인사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을 따른다.

부 칙(2015.1.9.)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5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제2조 본 인사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을 따른다.

부 칙(2016.6.17.)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7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제2조 본 인사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을 따른다.

부 칙(2017.8.16.)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7학년도 학년말(2018.3.1.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제2조 본 인사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을 따른다.

부 칙(2018.8.9.)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9.3.1.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제2조 본 인사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을 따른다.

부 칙(2019.8.6.)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0.3.1.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제2조

본 인사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을 따른다.

부 칙(2020.8.25.)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1.3.1.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제2조

본 인사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을 따르고, 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유·초등
교원인사관리규정시행세칙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인사관리 기준 시행세칙

1. 전보 서열 평정표 작성은 익산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에 의한다.
2. 보건, 유치원 교사 전보는 익산교육지원청 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에 의한다.
3.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결원(무자격 교사가 담당하고 있을 경우 포함) 이 있을 때에는 특수학급(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희망할 경우 우선하여 배치 할 수 있다.
4. 만기 전보자의 급지별 가산점과 우대 가산점은 동일교 최근 5년만 적용 한다. 다만, 폐교 및 학급 감축, 과원 조정으로 전보된 교사, 교감의 동일교 가산 점은 직전 근무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만 합산 가산한다. <개정 2017.8.16.>
5.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별도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6. 만기 전보자의 경우 **10희망까지** 작성하며, 희망교에 배치를 받지 못할 경우 전보 서열 평정 순위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 내규에 정한 학교 순위에 따라 배치한다. 단 동점자의 경우 만기자를 우선한다. <개정 2017.8.16., 2019.8.6.>
7. 일반 전보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5희망까지 할 수 있으며 희망학교에 배치 하지 못할 경우 전보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7.8.16., 2019.8.6.>
8. 복귀 및 복직자는 원적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적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만기 전보자에 준해서 전보한다.
9. 신설되는 학교, 정원 조정, 학급 감축, 급지 변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전보는 해당학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반영하여 시행한다. 다만,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기준의 최소 수준에 준하여 별도로 익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반영하여 시행한다.
10. 폐교대상 학교 교원은 만기 전보자에 준해서 전보한다.
11. 전국대회 입상 실적이 있는 예능지도 특기교사는 1년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 내신서와 해당교사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한다.
12. **삭제 <2019.8.6.>**

13. 전보서열표 작성 요령

가. 월단위로 계산 : 모든 가산점 해당.

나. 전보서열 평정점은 익산교육지원청 관내 전보 가산점 평정기준 일람표를 적용한다.(익산교육지원청 관내전보 가산점 평정 기준 일람표 참조)

14.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6.4.)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021.3.1.자 시행 관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 중 장애인 우대가산점은 무효가 됨에 따라 2021.3.1.자 해당 가산점은 익산교육지원청 인사관리기준 제1장 제3조 ①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인사관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전 내용	적용: 전라북도교육청 초등인사관리기준
<별표1>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3. 우대가산점 아. 장애인 배우자(1급) 및 직계존비속(1급)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함 ◦ 1년에 1점(2001.3.1.부터 적용)	<별표1>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3. 우대가산점 아. 장애인 부양 ◦ 장애인 배우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직계존비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에게 1점 부여(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함)

의산교육지원청 관내 전보 가산점 평정 기준 일람표

평정항목	상한점	세부 내용							
1. 학교급 지별 가산점	2005.3.1. 이후	급지	1	2	3	4	5		
		월평정점	0.017	0.025	0.034	0.050	0.067		
	2017.3.1. 이후	급지	1	2	3	4	5		
		월평정점	0.017	0.024	0.031	0.038	0.047		
	2020.3.1. 이후	급지	1	2	3				
		월평정점	0.024	0.031	0.038				
2. 우대 가산점 (동일직위, 동일근무교)		구 분				평정점			
가. 훈장 및 표창 (최고훈격 1개, 시군·수상시기 제한없음) (단, 현 근무교에서 수상한 교육장 표창은 1회만 인정, 최고훈격일 경우 2회 인정)		훈장.포장. 모범공무원. 모범교원대상(교육감) 대통령 표창, 모범 교원상(교육감) 국 무 총 리 표 창 장 관 표 창 교육감 표창, 총(학)장 표창 교육 장 표 창				2.5 2.0 1.5 1.0 0.5 0.25			
나. 연구실적 (1년 1종목 인정)	2.5	등급	규모	전국		시·도			
		1		2		1			
		2		1.5		0.5			
		3		1		0.25			
다. 연구학교 근무	2.5	지정별	교육부	도	시·군	실습협력학교			
		평정점	0.042	0.033	0.021	0.033			
마. 효행교원		◦ 포상 훈격별 평정점의 10%							
바. 학급 담임 교감		◦ 월: 0.083점							
사. 다자녀 양육 교원	1.0	◦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교원							
아. 장애인 부양	1.0	◦ 장애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년 이상 부양 교원							
자. 통합 학급 담임	1.5	◦ 월: 0.021점							
차. 복식 학급 담임	2.0	◦ 월: 0.042점(2020.3.1.부터 월 0.021점 적용)							
카. 특수 학급 담임	1.5	◦ 월: 0.021점							
타. 교과 전담교사	1.5	◦ 월: 0.021점(2017.3.1.부터 가산점 삭제)							
파. 영어 특기 교원	1.5	TEPS 점수	TOEIC 점수	TOEFL 점수			전보가산점		
		915 이상	960 이상	630 이상	293 이상	116 이상	1.50		
		872 이상	930 이상	620 이상	273 이상	111 이상	1.25		
		793 이상	875 이상	601 이상	257 이상	103 이상	1.00		
		710 이상	815 이상	580 이상	240 이상	95 이상	0.75		
		572 이상	700 이상	540 이상	217 이상	82 이상	0.50		
		508 이상	635 이상	517 이상	193 이상	70 이상	0.25		
하. 유치원 통화구연 (1998.3.10이후 적용)	우수1회만	등급		1	2	3			
		가산점		0.5	0.4	0.3			
거. 학생지도 실적 (1998.3.10이후 적용)	2.0	등위	구분	전국	도	시			
		1위		0.5	0.3	0.2			
		2위		0.4	0.25	0.15			
		3위		0.3	0.2	0.1			
너. 체육지도실적 우수교원	우수1회만	◦ 2007년 지도실적부터 인정(당해학교 최근 5년 이내)							
러. 파견교사	2.5	◦ 월: 0.042점(2008.3.1일 근무자부터 적용)							
머. 1,6학년 담임	1.5	◦ 6학년: 월 0.021점(1년 0.25점) – 2011.3.1.~ 2013.2.28. 근무자는 1년에 0.25점(월 0.021점), – 2013.3.1.~ 2019.2.28. 근무자는 0.3점(월 0.025점) 적용 ◦ 1학년: 월: 0.021(1년 0.25점)(2019.3.1.근무자부터 적용)							
버. 원도심 학교		◦ 월: 0.017점(2018.3.1.근무자부터 2020.2.29.근무까지 적용)							
서. 발명교실 전담교사		◦ 월: 0.0625점(2018.3.1.근무자부터 적용)							
어. 보건교사 가산점		◦ 월: 0.025점(2018.3.1.근무자부터 적용)							

<서식1>

1. 2020학년도 초등교사 수급자료

※ 기간제 교원 포함하지 말고 작성(교장, 교감, 기간제 교원 제외)

※ 아래 양식의 숫자는 예시입니다. 작성 시 숫자를 삭제 후 사용바랍니다.

()초등학교장 직인

학급수		감소요인(2021.3.1 예정자)										복직 복귀	총원 예정 교사 수	중복 교사 명단
현학급수 (특수제외)	2020예정학급수 (특수제외)	만기 전보자 (5년 이상)	일반 전보자 (2년 이상)	휴직 파견 사망 면직	타시도 전출 교환	시군간 전보 (부설, 특수학 교포함)	승진 면직	명퇴 정년	결원 기간 제 (사유 기재)	합계				
40	37	5	2	1	0	1	0	1	0	10	1	6		
2021 예정 학년별 학급수	학년	학급수	이름 적기	이름 적기	이름 적기	이름 적기	이름 적기	이름 적기	이름 적기 (사유)	이름 적기	이름 적기	중복 교사 이름 적기		
	1학년	5												
	2학년	6												
	3학년	6												
	4학년	6												
	5학년	7												
	6학년	7												
	계	37												

※참고사항 남녀교사수	총 교사수 ()명 (2020.2.29기준 퇴직, 휴직, 만기자 제외)	남교사수 ()명	여교사 수 ()명
----------------	---	-----------	------------

※ 정원에 초등교사만 기록하고 특수교사, 유치원, 보건, 비교과교사는 포함하지 말 것.

※ 총원예정교사수 = 2020학년도 예정학급수-(현학급수-감소요인합계)-복직,복귀

※ 감소요인에서 중복교사는 해당란에 명단은 모두 적되 1인으로만 생각해서 뺄 것

※ 만기자란 5년 이상 근속자를 말함

<서식2>

2. 보건 · 특수 · 유치원교사 수급현황 조사

※ 해당란에 ○표

()초등학교장 직인

구분	성 명	만기전보자	일반전보자	휴직예정자	명퇴예정자	시군간전보자	중복교사
특수교사 (특수학급)	○ ○ ○	해	당	없	음		
보건교사	○ ○ ○	해	당	없	음		
유치원교사	○ ○ ○		○			○	관내 전주

※ 교사의 이름은 모두 적고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서식3>

3. 관내 전보 희망자 현황

- ※ 순환전보자(만기자), 일반전보자 순으로 작성
- ※ 비고란에 순환(만기)와 일반 기록
- ※ 만기자는 10지망까지 작성, 일반은 희망에 따라 1~5지망까지 작성할 수 있음

()초등학교장 직인

순	성명	1희망	2희망	3희망	4희망	5희망	6희망	7희망	8희망	9희망	10희망	비고
1												만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식4>

4. 장기근속 교사 중 유예 희망자 명단

()초등학교장 직인

순	학교명	직위	성명(한자)	동일교 근속경력	유예 사유	비고
		초		16.03.01 21.02.28 (5년)		
				16.03.01 21.02.28 (5년)		

<서식5>

5. 학교장의 전입요청자 명부

()초등학교장 직인

순	근무학교명	직위	성명 (한자)	동일교 근속경력	전입신청 학교명	전입신청사유
		초		16.03.01 21.02.28 (5년)	초	
				16.03.01 21.02.28 (5년)		

<서식6>

6. 연구학교 우대전보자 명부

()초등학교장 직인

순	근무학교명	직위	성명 (한자)	동일교 근속경력	전입신청 학교명	전입신청사유
		초		16.03.01 21.02.28 (5년)	초	
				16.03.01 21.02.28 (5년)		

<서식7>

7. 체육 특기교사 전보자 명부

()초등학교장 직인

순	근무학교명	직위	성명(한자)	동일교 근속경력	전입신청 학교명	전입신청사유
		초		15.03.01 20.02.29 (5년)	초	
				15.03.01 20.02.29 (5년)		

<서식9>

만 기	○
일 반	

(1회망 학교명) 전보서열 평정표

교감() 교사(○) 특수() 보건() 유치원() 2021.2.28 현재



학교명	초등학교	직위	교사	성명	(인)	성별	생년월일	0000.00.00
생활근거지	시 동	동일교근속년수 (0.00)				교육총경력 (00.00)		
전보희망사유	만기	~	(0.00)	~	(질병휴직 0.00)	~	(육아휴직 0.00)	~ (00.00)
급지별가산점	()급지 ~ (0.00) 계 (0.000)점	()초등학교	()급지 ~ (0.00) 계 (0.000)점	()초등학교	계	0.000		
우대가산점	포상	수상일 훈격 평정점		연구실적	수상일 시행처 (등급) 평정점			0.000
	연구학교	학교(지정) 기간 평정점		특수 (통합) 학급 담당	학교명 기간 평정점			0.000
	1,6학년 담임	학교명 기간 평정점		교과 전담 교사	학교명 기간 평정점			0.000
	학생지도 실적	대회명 일자 등위 평정점		체육 지도 우수	대회명 일자 등위 평정점			0.000
	유치원교사 동화구연	등급 수상일 평정점		영어 가산점	점수 취득일 평정점			0.000
	효행교사	수상일 훈격 평정점		다출산교원	자녀수 관계 평정점			0.000
	원도심학교	기간 평정점		보건교사	기간 평정점			
	장애인부양	등급 관계 평정점	복식 학급 담임	학교명 기간 평정점		학교 기간 평정점		0.000
	발명전담	기간 평정점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초등학교장 (직인)						총점	
작성자							교감 (인)	
확인자							교장 (인)	

〈서식9〉 ()초등학교 전보희망자 명부(엑셀)

<서식10> 나이스 미등재자나 변동자만 제출

근무확인서

소속 : 초등학교

직위 :

성명 :

구분	근무학교	근무기간	비고
연구학교		~	
복식수업학급		~	
특수(통합)학급		~	
교과전담		~	
1, 6학년 담임		~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20 . . .

초등학교장 (직사인)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